

페이닥터, 봉직의사, 근무의사 위탁진료계약서에 근로자 아니라는 기재에도 근로자성 인정,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죄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1. 페이닥터 계약 요지

- (1) 위탁받은 진료업무 이행, 대가로 보수 지급하는 위탁진료계약 체결

- (2) 해당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근무시간 일정, 근무 장소도 진료실(원장실) 특정

- (3) 따라 페이닥터는 월 1회 상호 조정 하에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 및 실적을 의원

운영자에게 통지하고,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불성실하게 행한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4) 페이닥터는 의원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었다.

(5) "페이닥터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
라는 명시적 조항 있음

(6) 병원측 주장 요지 -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진료업무수
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진료업무를 적절히 수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에 기한 권리(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만을 행사
할 수 있을 뿐, 징계할 수는 없었다. 연차 등 휴가규정은 따로 없었고, 휴가로 진
료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대체의사를 구해 그로 하여금 진료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근로자성 불인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

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대법원 판결이유

-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게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병원은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E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진료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첨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